

第97回(定期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市民行政委員會會議錄

第5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9年12月21日(火) 11時00分

場 所 市民行政委員會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4.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污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9面

(11時00分 開議)

○委員長 李憲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開議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 수행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합니다. 금세기 마지막 정기회도 오늘로써 거지만 마무리하고 우리 모두가 희망과 기대 속에 맞이하게 될 새 천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난 7월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그동안 원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로 큰 대과 없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吳炳漢 行政管理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지방의원의 위치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진정한 민주주

의의 발전을 위해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주민 여론의 대변자로서 민원해결은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정책평가와 감시감독을 통한 견제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처리하는 안건들도 신중히 검토한 후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당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느라 吳炳漢 行政管理局長이 병환이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李炳滿 總務課長이 질의에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고 신속 정확하게 답변에 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張慶洙입

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99년 12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 그리고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 및 畜産廢水의 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모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張慶洙 議事擔當主事! 수고하셨습니다.

-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2.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3.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11時03分)

○委員長 李憲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2항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의사일정 제3항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 및 運營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을 일괄 상정합니다.

李炳滿 總務課長!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안녕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 복지향상은 물론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사회복지전문요원인 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과 관련, 우리 구 정원이 증원 책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보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직 17명이 증원됨에 따라 조례(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242명을 1,259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1,218명을 1,235명으로 1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과 관련 일반직 전환 및 확대배치로 사회복지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아름다운 종로건설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總務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99년 12월 13일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정입니다.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하고 저소득층의 기초적 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증원하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사회복지직 정원내용 승인 및 직급별 정원을 보면 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2명 있는데 사회복지직으로 2명을 전환하고 추가승인이 17명이 났습니다. 계 19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7급이 7명, 8급이 6명, 9급이 6명 등 총 19명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의 구분을 살펴보면 일반직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서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로써 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토목직, 사회복지직 등이 있습니다. 별정직은 보수 및 복무를 제외하고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로써는 비서관, 비서 기타 법령 또는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임용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이상 자격자이고 직무내용은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 주요골자는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242명을 사회복지직 17명이 추가승인되어 1,259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직의 추가배치로 날로 증대되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기대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炳滿 總務課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안녕하세요? 總務課長 李炳滿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조례의 제안설명은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날로 다양화되는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로 생활체육 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체육의 행정수행을 위해 체육행정관리분야의 일부 임용자격기준을 보완 정비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 분야의

체육지도사 7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 항목 중 4년제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시민행정위원회 李憲九 委員長님과 그리고 委員님 여러분! 생활체육 행정분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總務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別定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정입니다. 생활체육 행정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생활체육 행정구현을 위해서 별정직 공무원인 행정관리분야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현행 7급 상당 지도사의 임용자격 기준을 살펴보면 직무내용은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여가생활진흥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도, 체육교실 및 레저교실 등 운영이며 임용자격은 첫번째, 4년제대학 체육관련학과 졸업자로서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둘째,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체육에 관한 연구지도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셋째, 사회체육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체육에 관한 행정, 연구, 지도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넷째,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행

정관리분야의 7급 상당지도사의 임용자격기준에 4년제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를 추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4항에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4년제대학의 체육특기자 졸업자로서 선수경력이 4년 이상인 자는 통념상 체육에 관한 재능과 조예가 깊은 자이므로 7급 상당 지도사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서울시 7급 상당 지도사 임용자격기준에 기이 규정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炳滿 總務課長!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다음에 제안설명 드릴 사항은 그 동안 구민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997년부터 2년여간의 공사 끝에 희망의 새천년 2월에 개관하게 될 구민회관의 설치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구민회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구민회관은 대지가 1,202평에 건물이 3,383평으로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입니다. 층별 주요 시설로는 지하 2층은 52대 규모의 지하주차장 지하1층은 국제규격인 길이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 지하 1층은 보건소와 전시실 용도로 사용되며 지상 2층은 460석 규모의 대강당과 대·소회의실 그리고 지상 3층에서 5층까지는 다목적 종합체육관, 헬스장, 신체조실, 컴퓨터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의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했습니다.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는 공익을 우선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 공단 등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민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는 구청 관런부서 간부와 의회의 시민행정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편성하고 의원님 2~3분 정도를 별도로 위촉드려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구민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심의에 있어서 가장 관심사항이 될 사용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면제대상은 구청장이나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 공공단체, 직능단체 등이 공익을 위해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법정 생활보호대상자 등 법령에 의해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생활이 어려운 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식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구위선양과 체육진흥, 전통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행사와 노인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면근거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와 타구의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그 외에 수영장과 체육관, 탁구장 등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준용했으며, 기타 사용료는 타구의 사례를 참고해 중하수준으로 조금 저렴하게 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료는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에 관한 규정,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 발행에 관한 규정,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한 일반적인 입장제한 규정과 수탁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구민의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구민회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李炳滿 總務課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運營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구민회관의 신축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사용자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종전에 사문화되었던 종로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조례제명을 변경하여 종로구구민회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 및 사용자 징수조례로 바꿨습니다.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회관의 시설에 대한 사용자 징수요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문별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위치에 관한 일반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는 회관의 관리 및 운영을 구청장 책임 하에 하되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제4조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도록 하였던

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의 규정에 근거한 조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5조는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종로구민회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던 바 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바 규칙에의 규정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6조 및 제7조는 회관시설 및 설비의 대관승인 및 임대사용 허가에 관한 조항으로 일정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일부 감면의 경우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하였던 바 감면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서울특별시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30% 이내의 감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감면 내용을 보면 구청장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국가·공공단체 또는 직능단체들이 직접 종로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리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무료로 주관하는 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생계의 보호나 지원을 받는 자 즉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본인 또는 자녀결혼식은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구위선양과 체육진흥,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 노인 또는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할 때는 5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는 시설별 사용료에 관한 조항으로 수영장, 체육관, 탁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서울시 및 타구에서 징수하고 있는 요금체계와 동일하며 대강당,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피아노, 음향기기, 영사기 등 부속시설 및 컴퓨터 교육시설의 사용료는 타구와 대비 중하의 요금수준으로 분석됩니다. 제9조에서 사용자가 구청장과 협의 하에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입액의 20%를 사용료로 납부토록 한 것은 서울시 및 타구의 사례와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및 제11조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민회관 시설 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현황은 우리 구 사용요율의 적정선 여부 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시설별로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시설의 경우는 중구, 동대문구, 성북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는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속시설의 경우도 동대문구, 성북구, 강서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여가선용과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인 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계획 및 사용료의 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뒷면에 첨부한 관련법규는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지금 다른 것 보다는 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선 270억에 가까운 시설비가 들어가서 건립한 구민회관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필요한 판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료 징수에 관해서는 타구의 사례를 참고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생각을 하겠지만 여기에 보면 4조를 보면 구청장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운영을 위탁할 때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예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구민회관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 4조의 1, 2가 수탁자에 대하여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정관에 종로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종로구의 시설을 위탁관리하게

되어 있다면 굳이 이렇게 1항과 2항을 넣어서 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규정한 이유는 됩니까?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질문이 복잡해졌는데 간단하게 줄이면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4조에 1항이나 2항에 수탁자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이유가 무엇이나 이것입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저희 구에서는 구민회관을 공단으로 위탁해서 관리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기에서 공단이라고 딱 못을 박지 않고 수탁자가 개인이나 또는 다른 나중에 공단이 없어진다고 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일반사항으로 일반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安載弘委員**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이나 종로구의 주민 여러분들은 거의 구민회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기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한 것도 독립채산제에서 구의 감시와 감독을 받도록 하는 예산을 중속시키는 걸로 변화를 시켰는데 이렇게 비용부담에 있어서 1항과 2항을 나눠서 한 것이 어떠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충분치 않아서 재차 질문을 드리는데 굳이 수탁자에 대해서 구민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라든지 1항과 2항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내용이 계속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없어질 것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조항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總務課長 李炳滿**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조례를 규정할 때 어느 특정단체를 지정하지 않고 수탁자에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항을 넣어놓은 것이 어떤 다른 의도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이렇게 일반사항을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 조례로 규정할 때는 어느 특정 공단이나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좀 조례를 제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조항입니다.

○安載弘委員 일반 조항이라는 말입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고 수탁 관리하는 사람들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1항, 2항으로 넣었다는 말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 그렇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회관을 관리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면 굳이 공유재산의 대여라든가 출자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의 부담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또는 제3의 수탁자로 하여금 구민회관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공유재산의 대여나 어떤 돈의 출자라든가 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그러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란 거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委員님께서 말씀하시는 수탁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놓고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고 이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냐 그런 질문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또 운영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가 있어야 할 경우에 그 경우를 상정을 해서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2항같이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단 외에 단체에 대해서는 출자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5조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단 외의 단체에

대하여 출자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경비를 주고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으로써 여기에서는 지방공단을 묵시적으로 저희가 규정 한계에 포함한 규정으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安載弘委員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렇지 않으면 타구의 사례나 시의 사례를 인용하다 보니까 비용부담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없는 구의 것을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조에 운영위원회가 나와있는데요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12조 시행규칙에서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위임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안 설명을 할 때 보니까 시민행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회 위원들을 운영위원회에 넣겠다고 했는데 명시적으로 드러난 내용은 없고 규칙에 정하려고 위임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구민회관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은 저희 구민들이 오셔서 모두 이용을 하시는 그런 회관이기 때문에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문제점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단이나 또는 저희 구청에서 독단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정을 해서 해결을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이나 또는 주민 그리고 문화나 체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운영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자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자꾸 발견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4조에서는 수탁자의 모든 비용부담에 대해서 구가 비용부담을 한다고 하고 5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인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이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게 구민회관인데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구민회관 운영을 할 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죠. 4조하고 볼 때.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탁을 하기로 하고 모든 것을 결정해놓고서 왜 4조와 5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느냐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조례를 본다면 조례만 놓고 본다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해서 조례만 놓고 본다면 적어도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먼저 구민회관 운영에 대해서 추후도 다른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수탁자 선정 문제나 경비부담 문제는 저희가 일반적인 규정으로 넣어놓은 것이지 특별한 것으로 해서는 추후도 없습니다.

○**安載弘委員**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각 국에서 조례를 상정해서 의원들이 조례를 심의해서 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통과되면 조례가 법률적인 의미를 갖는 것인데 조례에 규정된 의미대로 되는 것인데 일단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정답은 아니고 이 회관의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과 4조에서 수탁자에게 일정한 공유재산의 대여나 또는 사용 또는 어떤 비용의 부담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조항이라는 겁니다. 4조나 5조는. 지금 설명을 명쾌하게 해보세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구민회관을 설치 운영을 한다고 그렇게 전제가 된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지금 「구민회관설치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완전히 전문 개정하는 거나마찬가지인데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4조나 5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가요. 위원님들도 4조와 5조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수탁자를 별도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즉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제3의 기관이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구민회관의 수탁자로 위임받아서 수탁 관리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입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安委員님께서도 그런 우려 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참여하시고 하기 때문에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해서 저희 운영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安載弘委員** 지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 조례를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안 만들어놨을 거라구요. 그러면 여기에서 12조인가 12조에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어차피 규칙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 국에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치더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두번째 질문을 드린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운영 계획이 무엇이나 그것도 질문을 드린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다만 구성상에 의원들이 세 분이나 두 분이나 참여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라는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운영위원회와 각종 구의 각 국에 소속된 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시행이 되느냐, 집행부의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세부적인 규칙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었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합리적인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굳이 운영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하면 굳이 운영위원회에 옥상옥을 만들어서 일일이 회의가 얼마나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운영위원회의 내용이 없이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예, 安載弘委員님! 좋은 질

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면은 저희가 년도별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까지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그리고 수탁자 선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동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내용을 4조 하고 5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길어지니까 질문을 일단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권을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질의하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安載弘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구와의 조례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타구에서도 4조와 5조에 관계되는 내용과 같이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에서도? 타구하고 비교 검토를 하셨다고 하니까 묻는 겁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타구하고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저희처럼 구민회관을 공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지금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그래서 저희가 통상 조례를 만들 때는 포괄적으로 수탁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도 조례 조항을 봤는데 거의 수탁자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가 우리 구민회관 관련되어 있는 직원들보고 타구의 것을 빼오라고 했었어요. 도봉구 것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안 나와있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安載弘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는데 도봉구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는 별도 조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하나로 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지금 4조와 5조를 보면 물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겠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겠지만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준다는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가다듬고 해지겠습니까마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애깁니다. 그래서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겠고, 그것은 좀 이따가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어디에 보면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총무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신 우리 법 조항에 보면 사용료 문제 이 사용료는 지금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고 중하위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놨더라구요, 보니까. 중하위 정도로 책정을 해놨는데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받는 타구도 상당히 많죠? 오히려 그것이 많더라고. 안 받는 구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우리가 받았는데 보니까 안 받는 구도 많은데 그까짓거 사용료 5만원 8만원 받아가지고 큰 도움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규정을 두고 해서 받는 것까지도 좋겠지만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1년이면 1년을 유예를 두고 종로구민에게 개관했다는 것도 알릴 겸해서 전면 무료 개방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말이죠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그래서 李東奎委員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구민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무료로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을 모처럼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 그렇게 시설을 좋게 해놓고 처음부터 하게 되면 저희 생각은 무료로 사용하면서 그만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관리도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서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 경비를 받아가지고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조금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하위 정도

로 결정을 했습니다.

○李東奎委員 중하위 정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7조에 사용료 징수에 보면 7조1항에 보면 구청장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는 무료라는 얘기겠죠? 무료를 얘기하는 거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李東奎委員 구청장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 구를 포함해서 동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그래서 동까지 포함되어서 소속기관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포괄적인데 그 뒤에 보면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면 구의원들이 주관하는 행사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구청에서 구청장 소속기관을 포함한다라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넣어 주셨는데 그 뒤에 보면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라는 얘기는 포괄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구의회는 구의회 전체에서 하는 행사를 제외하고는 안된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總務課長 李炳滿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께서 사용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구의회에 이야기해서 의장님이 승인하시면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되겠습니다.

○李東奎委員 의장님이 승인을 해주면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하는 걸로 된다는 거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저희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장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때 되는 겁니다.

○李東奎委員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구의회가 주관하는' 이것이 좀 애매모호한데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구청장 관호(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관호로 거기를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그리고 관호를 닫고 '주관하는 행사'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괜찮지 않나요? 좀더 바뀌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냥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하면 포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고쳐주실 의사는 없으시죠?

○總務課長 李炳滿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해도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서류를 놓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검토를 할 때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조금 괄호를 닫고 열고 해서 말이죠 여기에다 참고 자료를 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 우리 安載弘委員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그 답변이 나왔으면 답변을 해주세요. 도봉구에서는 그런 설치조례가 없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노원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거기에도 3조에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 해가지고 구청장이 위탁해서 관리 운영을 비영리법인인 공단이나 단체에 시설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길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는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고 그래서 도봉구 것을 보신 모양인데 다른 구의 것은 다른 구들은 그런 조항이 들어간 조례가 많습니다.

○李東奎委員 많은 게 아니라 비교적 그 조례가 적어요. 많은 것이 아니라 타구 것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타구의 설치조례나 운영조례에 대해서 사용료징수조례를 보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타구와의 비교표를 보면 지금 4조나 5조에 보면 그 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도와주겠다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관련법규 조항이 비교적 타구는 적다는 겁니다. 그런 조항이 들어가 있는 타구가 소수예요. 그리고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그런데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李東奎委員 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수탁을 시키면서 저희가 비용 부담을 해줘야지요.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에 보더라도 공사나 공단이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또 이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李東奎委員** 필요한 경비가 어디까지냐고요. 필요한 경비, 포괄적으로 필요한 경비가 어디까지냐고.

○**總務課長 李炳滿**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운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민회관을 운영하는데 사람도 써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도 써야 될 것이 아닙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기타 많은 것이 들어가는데 공공세도 내야 되고 전체에 대한 운영에 대한 것도 우리가, 저 역시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 그것 가지고는 설득력이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업을 대행시킬 때는, 정부기관의 사업을 대행할 때는 저희도 경비를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공단에다가 이런 운영을 맡길 때는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당연히 줘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입이나 그것은 저희가 바로 수익으로 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조례상 원칙입니다.

○**李東奎委員** 이상하네. 이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타구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설득력이 있지만 이것은 이렇게 하면 설득력이 안 서는데 저도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洪起瑞委員! 질의하십시오.

○**洪起瑞委員** 洪起瑞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중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복지사가 지금 현재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 2명이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2명입니다.

○**洪起瑞委員** 추가 신규 17명이면 17명을 새로 공채를 할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채를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하는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19명에 대한 것이 동별로 배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에다 별도로 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사회복지직은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복지업무를 주로 동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동에 1명씩 배정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정원을 19명으로 잡은 겁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7급 7명, 8급 6명, 9급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7급도 전부 동으로 배치가 될 것이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주민 복지업무가 많은 동은 7급이 나가게 되고 좀 적은 동은 8급이나 9급이 나가야 되고 아마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서 19명을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공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지난 11월 21일날 사회복지직 시험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구도 서울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시험 관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격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이게 만약 조례가 되면 2000년 1월부터 바로 우리 구에 배치가 됩니까?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시간이 소요되는 건가요?

○**總務課長 李炳滿** 아마 내년 1월 중에는 저희 구로 재원이 넘어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 7급상당 지도사 임용자격기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 근무 경력자가 4년에 나와있죠? 그러면 일반직 8급으로 3년 이상 건전생활분야 행정근무

경력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구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7급 지도사로 임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洪起瑞委員 그러면 예를 들면 생활체육계장 같은 사람들, 주사같은 사람들이 이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인가요?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 문화진흥과의 생활체육 지도사 6급에 상당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7급 상당의 직원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었습니다. 여기서 일반직이라는 것은 지도사가 아니고 일반행정직이나 기술직 등 일반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洪起瑞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洪起瑞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鄭泰淳委員! 질의하십시오.

○鄭泰淳委員 鄭泰淳委員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安載弘委員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3조를 보면 「회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그 문제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들이 재력이나 인과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개인이 많이 있는데 그와 유사한 간판대라든가 구에서 연관있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 같은 경우는 27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시설도 좋고 해서 개인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개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좋은 시설이 있으면 개인들이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분들

이 많이 있고 또 지금까지 구와 연관된 시설에 대해서 그런 유사한 일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지금 저희가 3조에서 관리운영 면에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규정한 사항이고요. 지금 공단조례 같은 데서 저희가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구민회관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은 조항입니다.

○鄭泰淳委員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일반적으로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이 그러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에 근거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것은 어떤 한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어떤 개인이 이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炳滿 공단설치조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공단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안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鄭泰淳委員 공단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그러면 일치시켜 놓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도 없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유혹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저기도 될텐데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가 이 조례를 일반사항으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지방자치법 95조에 보면 사무위임 등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가 참고로 해서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권한에 속한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정을 참고로 해서 개인·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鄭泰淳委員 저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든 지나온 과정을 보면 어느 관이든 국

가든 그러한 유사한 관계가 많이 밀착되어 있고 문제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이것이 악용의 소지도 있을 뿐더러 지금 그 자체를 놓고서 여기 있는 위원들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한다면 추후에 그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염려같은 것은

○**鄭泰淳委員**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국가나 일반 지방자치단체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권력이 있거나 재력있는 사람이면 너나없이 누구나 그렇게 하고자 해서 암암리에 하는 그런 것을 위원들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 문제가 언론기관에 보도되는 사례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정비해준다고 하면 그러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이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 가지 염려사항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공단설치조례에 구민회관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까지는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일반 사항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鄭泰淳委員**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근거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보시오.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하면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가 되시면 저희도 이런 일반적인 규정을 굳이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저희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로서 일반사항을 규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

하시면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은 추후도 없습니다.

○**鄭泰淳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鄭泰淳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질의하십시오.

○**安載弘委員** 사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은 어차피 구민의 조세에 의해서 마련이 된 것이고 조세가 다시 사회적으로 환원되어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구에서 제출한 사용료 기준안에는 물론 찬성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타구와 비교해서 우리 구는 중하위 가격을 결정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데와 낮은 데의 중간 중에서 아래 가격을 택했는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總務課長 李炳滿**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동안에 종로구민의 숙원인 구민회관을 해놓고 물론 전에 지은 구민회관 보다는 저희가 더 현대식 시설입니다. 그래서 높은 사용료를 받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높은 사용료를 받음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아끼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민의 세금으로 지은 구민회관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높은 가격보다는 중하위 가격을 택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입니다. 물론 의견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시설을 유지관리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예산에서 편성이 되어야 하고 그 편성된 예산 역시 주민의 조세에 의해서 부담이 된다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주민을 위한 시설에 대한 고정관념을 타파해서 소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즉 말하자면 사용료를 책정할 때 중하위로 택하지 말고 중

상위나 또는 높은 수준의 사용료를 택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은 일반 통념상 사회에서 사용하는 대관료나 사용료를 볼 때 사실 높은 게 아니라고 본다면 말이죠. 차라리 중상위를 택해서 사용료 수입을 가지고 다시 그 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지보수와 관련된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사용료를 그 시설들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도만큼 적어도 같아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볼 때 실제로 중상위를 택한다 하더라도 사용료의 차이는 1만원에서 2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실제로 각종 행사를 할 때 1만원이 비싸다고 해서 안 하거나 덜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본 위원은 이 사용료(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하위를 택할 것이 아니라 중상위로 택해서 1만원 차이인데 그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도 이런 시설을 해놓고 될 수 있으면 거기서 나온 사용료로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종로구민이 그 동안 구민회관 하나 없어 가지고 사실 각종 행사를 하려고 보면 심지어 일반기업체에 가서 사정을 해서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희도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더군다나 구민들께서도 구민회관 하나 없어 가지고 저희 구청 4층 강당 그런 시설을 사용했을 때 종로구민으로서 자존심은 안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개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료를 일단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수지균형이 맞는 안으로 차츰 올려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安載弘委員**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모든 물가라는 것은 최초로 가격책정을 제대로 해서 그 가격을 받다가 내려주면 주민들이 좋아해

도 적은 금액을 받다가 올리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속시설, 체육시설, 기본시설,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한 번 상향조정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상 질문 일단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金正大委員! 질의하십시오.

○**金正大委員** 金正大委員입니다. 다 질의를 끌고루 해주셨는데 동료위원의 뜻도 제가 보니까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쪽에서는 사용료를 전면 무료로 할 수 없느냐. 한 쪽에서는 상향조정할 수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육시설, 기본시설, 교육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조례(안) 마지막 장에 사용료 현황 나와 있죠? 청소년 주 1회 하면 1시간에 수영장이 7,100원이라는 뜻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체육시설은 주 1회는 1시간을

○**金正大委員** 1시간을 말하는 겁니까? 주 1회에다가 강습프로그램 월 사용료 1시간 기준 해놔는데

○**總務課長 李炳滿** 월 사용료입니다. 주에 한번씩 와서 했을 경우에

○**金正大委員** 주에 한번이라는 것이 1시간이나 이 말입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맞습니다. 주 1회 1시간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주 1회 하는 것은 1만 500원 성인이, 청소년이 7,100원 어린이는 5,100원 이것은 1시간을 뜻한다 이 말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炳滿** 맞습니다.

○**金正大委員** 시중하고는 어때요? 개인 민간업자들이 하는 것하고는 몇 분의 일로 봐요? 조사도 해보지 않았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한 30% 정도 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나 각 구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이 정도 수준을 받고 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주 6회인데 5만 3,500원이죠? 성인이. 그런데 여기에 주 6시간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6시간 이상은 못해요?

○**總務課長 李炳滿** 1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2시간을 했을 때는 배가 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그렇게 되겠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일반 개인시설이 하는 것에 비해서 별로 싸지 않은 것 같은데 하루종일 몇 시간씩 있다가 오면서 월 10만원, 8만원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동 주변에 수영장이 두세 군데 있습니다. 아침에 가면 여성들이 아주 오래도록 있다가 오는데 8,9만원씩 내던데요. 시간당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상당히 이것이 비싼 것 같은데 만약에 하루종일 있으면 시간당 1만 500원씩이면

○**總務課長 李炳滿** 여기 시간당 1만 500원이 아니고요.

○**金正大委員**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께 이해를 못시켜드렸는데 주 1회라는 이야기는 이 1만 500원은 월별 금액입니다. 위에 나와 있잖아요? 월별로 4번을 한 주마다 한번씩 오는 것이니까요. 지금 요금은 월 요금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게 합시다. 이것으로 보면 위에 월 강습프로그램에 월 사용료는 1시간 기준이라고 했는데 월 사용료가 1만 500원이 1시간 기준이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總務課長 李炳滿** 이것은 주 1회 했을 때 1시간 기준입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한달에 시간이 없어서 한 주에 1시간만 나와서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받겠다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만약에 2시간, 3시간 있겠다는 사람한테는,

○**總務課長 李炳滿** 거기에 맞춰서

○**金正大委員**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4시간 있으면 4만 2,000원 내야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저희가 운영하는 사용료 외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사용료는 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온 것이 1만 500원이고

○**金正大委員** 그러니까 한 주에 1시간이라는 뜻 아니에요?

○**總務課長 李炳滿** 예, 1시간입니다.

○**金正大委員** 왜냐하면 동료위원이신 安載弘委員께서 상황조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한쪽에서는 당분간 무료로 개방하자는 양론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 1회인데 그러면 한 달에 한번 1시간 나왔을 때 1만 500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總務課長 李炳滿** 아니죠.

○**金正大委員** 설명이 부족해요. 혼동이 됩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여기 주 1회 그러는 것은 월 별로 요금을 받되 일주일에 한번 나오느냐 두번 나오느냐 세번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金正大委員** 결국은 그런 뜻인데 월 주 6회 하루 1시간씩 이상은 못 나오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물론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시간 이상도 할 수 있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월 5만 3,500원으로 알면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金正大委員** 그러면 매주 1시간씩인데 2시간씩은 주 6회씩 나왔을 때는 어떻게 곱으로 해야돼요? 10만 7,000원으로 보면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런 경우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자꾸 번복을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조사를 잘 하셨느냐 그 주변의 개인시설물 그 사람들은 영리목적이기 때문에 돈이 남지

않으면 그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투자하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만약에 일주일에 한번씩 나와서 1시간인데 1시간으로 적으니까 2시간으로 했을 때 사용료는

○**總務課長 李炳滿** 그러면 배로 내야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10만원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무슨 수영장 하루에 2시간씩 나가는데 30만원, 50만원씩 받는 데가 있어요?

○**總務課長 李炳滿** 10만원 이 정도밖에 안되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똑같은데 뭘 그래, 우리가 싸지도 않은데 상당히 비싼 건데

○**總務課長 李炳滿** 하루에 2시간씩 해서 일주일 에

○**金正大委員** 이것이 여기서 통과되면 이대로 시행되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생활관 요금이나 이 요금의 체계는 같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런데 사용료란은 수영장, 탁구를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 탁구장을 제외한 시설에 수영장, 탁구장을 제외했다는 말이 왜 또 번복이 됩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수영장하고 체육관 시설은

○**金正大委員** 탁구장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료, 제외한 사용료임 하면 되는데 또 뭘 시설의 사용료,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은 수영장, 탁구장을 제외한 사용료다 이 말입니다. 탁구장도 돈을 이렇게 3만 2,000원씩 받겠다는 겁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체육관 등의 사용료란에는 수영장이나 탁구장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金正大委員** 그러면 탁구장도 사용료를 낸다 이 말 아닙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물론 내죠.

○**金正大委員** 그러면 각 동에 취미교실로 되어 있는 탁구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료 전혀 안 내잖아요?

○**總務課長 李炳滿** 각 동에서 취미교실로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강사료가 지급되는 데는 저희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구민회관은 그만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탁구장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금이라 하는 것은 개인들이 와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강습을 했을 때 여기는 강습료까지 포함된 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습프로그램을 했을 때 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金正大委員** 그리고 기타 시설의 관리사무실이 34평이고 식당이 90평, 매점이 6평입니까? 지하 1층에 그러면 매점과 식당과 사무실은 무엇인데 위탁운영 예정입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관리사무실입니다.

○**金正大委員** 식당을 위탁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공단에 위탁권이 주어집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예, 그렇습니다.

○**金正大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憲九** 金正大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 委員 있음)

예, 李東奎委員! 토론해 주십시오.

○**李東奎委員** 李東奎委員입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의시간에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동의를 요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지금 李東奎委員께서 7조1항에 「구청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회(구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이것을 첨가시키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總務課長 李炳滿** 의정활동 관련행사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런데 여기는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委員長 李憲九 李東奎委員 얘기도 의의가 있는 얘기죠. 너무 포괄적이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총무과장님! 구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구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다 포함된다고

○總務課長 李炳滿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李東奎委員 그러니까 여기에다 그것을 넣자 이거죠.

○委員長 李憲九 넣지 않고도 명시적으로 기록에 넣고 나중에

○李東奎委員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委員長 李憲九 조금 조례 조문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總務課長 李炳滿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들의 정활동에 지장이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여기 조례로 봐서 안 넣으셔도 저희가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李東奎委員님!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李憲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委員長!」 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토론하십시오.

○安載弘委員 3조의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회관은 청장의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한다 그리고 단서로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은 말이죠.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장 제15조제3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15조에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그리고 「구민회관 관리 및 운영사업」이라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과 이 3조가 어떻게 보면 배치되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으니까 「회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책임 하에 관리 운영하되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 및 운영사업을 위탁한다」라는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이 두 조례가 일치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에는 명시적으로 해놓고 이 조례에서는 이렇게 나눠

서 해놓으면 사실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죠.

○總務課長 李炳滿 예, 좋습니다.

○安載弘委員 그래서 이 관리 및 운영권과 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단체·법인에 대한 위탁조항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는 동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委員 있음)

○安載弘委員 그리고 제9조에 보면 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 발행 제3항이 있습니다. 제3항을 보면 「제1항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8조는 바로 총체적인 조문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1항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고쳐져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8조는 세 가지 항이 있어요. 대관 사용승인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별표, 그 다음에 2항은 2항, 3항은 3항대로 있으니까 이것은 결국 입장료를 징수해서 입장권을 발행한 경우에 관람 수입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는 것이니까 9조의 3항은 이렇게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죠. 「제1항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라고 명시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總務課長 李炳滿 알겠습니다. 저희는 8조라고 해서 8조 3항까지 포괄적으로 넣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安載弘委員 어차피 사용료로 징수하는 내용이니까 그 내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입장제한이 있는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객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청장이라는 구절은 3조에서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직접 설치운영 관리할 때는 이 사안이 구청장이라고 되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조례가 적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매모호하거나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글자를 고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입장제한에서 '구청장은' 이것을 말이지 '수탁자 또는 관리·운영자'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이 나오는 것은 구청장이 구민회관을 직접 설치 운영·관리할 때는 구청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게 한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차피 수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 구청장이라는 말이 좀 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그런데 앞으로 직영을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구청장으로 해놔야 돼요.)

○總務課長 李炳滿 수탁자도 구청장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洪起瑞委員 議席에서 - 우리가 왜 그러면 우리가 계속 수탁을 하다가 다음에는 직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조례를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놔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安載弘委員 그럴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2分 會議中止)

(12時39分 繼續開議)

○委員長 李憲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하는委員 있음)

예, 安載弘委員! 토론하십시오.

○安載弘委員 安載弘委員입니다.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중에 제3조 단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인·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제1항에서 「회관의 합리적 운영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를 「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로 하고, 제9조제3항 「제1항의 경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제1항의 경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安載弘委員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정이 있습니까?

(「재정입니다」하는委員 있음)

재정이 있으므로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동의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토론하실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安載弘委員의 수정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總務課長은 퇴장해도 되겠습니다.

4.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提出)

(12時43分)

○議長 洪承台 의사일정 제4항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나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生活福祉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董連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李憲九 委員長님!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시민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99년 2월 8일 상위법인 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법률의 개정과 '99년 8월 9일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우리 구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 및 일부 내용을 개정된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동법률에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조례에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 시의 사무실 규모, 자본금 등 기준 일부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법률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에 인용된 법조항을 정확히 하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이 불가피한 현실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鐘路區廳長)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委員長 李憲九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姜光日 專門委員!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姜光日 專門委員 姜光日입니다. '99년 12월 13일자 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の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상위법령이 개정 또는 삭제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된 법조항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입니다. 수정 삭제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례 제3조제1항에서 규칙 제30조제3항을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4조제2항에서 법 제58조제1항을 법 제58조제2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 조례 제18조제1항에서 규칙 제18조를 삭제했습니다.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시행령 제27조 관련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은 종전의 시행규칙 제79조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하면서 일부를 수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과 제20조제3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했습니다. 분뇨관련 영업 대행계약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사무실이 현행 전용면적 15㎡ 이상으로 되어 있었으나 규모가 없어졌고, 차고시설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능력은 대동소이하며, 자본금과 전화 기타 시설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된 내용은 시행령에서 삭제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청소 관련사항도 사무실에서 전용면적 기준이 삭제되었고, 차량은 현행과 같고, 차고의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기술능력은 대동소이합니다. 자본금과 전화 기타 시설이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 제18조제1항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개정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며, 조례 제10조제3항 관련 「별표2」에서 분뇨관련영업 대행계약의 기준을 시행령 제27조 관련 신설된 「별표6」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업 대행계약을 하려면 법 제3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하여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은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신설 규정되었으므로 조례에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58조와 시행령 제35조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112조에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하였으므로 조례 제20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과태료의 징수절차로 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憲九 姜光日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의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2월 22일과 23일은 시민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서 작성회의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97회 종로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12時52分 散會)

○出席委員 9人

李憲九 安載弘 鄭泰淳 千相旭
劉燦鍾 朴鍾植 洪起瑞 李東奎
金正大

○出席專門委員

姜光日

○出席關係公務員

生活福祉局長 董連浩
總務課長 李炳滿
清掃行政課長 李相道